

No. 43191

**Republic of Korea
and
Croatia**

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roatia on mutual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/service passports. Budapest, 2 February 2001

Entry into force: *16 June 2001 by notification, in accordance with article 7*

Authentic texts: *Croatian, English and Korean*

Registration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: *Republic of Korea, 15 November 2006*

**République de Corée
et
Croatie**

Accord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roatie relatif à la suppression mutuelle des formalités de visas pour les titulaires de passeports diplomatiques et officiels/de service. Budapest, 2 février 2001

Entrée en vigueur : *16 juin 2001 par notification, conformément à l'article 7*

Textes authentiques : *croate, anglais et coréen*

Enregistrement auprès du Secrétariat des Nations Unies : *République de Corée, 15 novembre 2006*

[KOREAN TEXT – TEXTE CORÉEN]

**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
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**

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(이하 “체약당사국”이라 한다)는,

양국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,

평등과 상호주의에 기초한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 1 조

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국민은(이하 “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”라 한다)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없이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.

제 2 조

타방체약국의 영역안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와 그들의 가족구성원은 재임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입국·체류할 수 있다.

제 3 조

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외국인의 이동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국제여행객에게 개방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의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의 입국·출국이 허가되어야 한다.

제 4 조

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바람직하지 아니하거나 비우호적인 인물로 간주하는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의 입국 또는 체류 허가를 거부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 5 조

1.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·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이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.

2. 위의 보호조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체약당사국에 통고되어야 하며, 이 통고의 접수후 즉시 적용된다.

제 6 조

1. 각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효한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의 견본을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타방체약당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.

2. 새로운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도입이나 현행 여권의 변경시에도 각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그 견본을 타방체약당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.

제 7 조

1.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.